

# 국내외 파견 및 연구년제에 관한 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본 대학교 전임교수 (이하 “교수”이라 한다)의 학문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국내외파견 및 연구년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국내외파견이라 함은 교수가 국내외에서 제반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 동안 파견 근무를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. 단, 방학중의 단기 해외연수는 제외한다. 연구년이라 함은 교수가 강의와 학사업무를 떠나 연구(저술 및 작품 활동 포함)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부여한 기간을 말한다.

제3조(자격 및 기간)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수는 국내외 파견 또는 연구년을 신청할 수 있다.

1. 본교에 계속하여 6년 이상 재직한 부교수 이상 전임교수
  2. 이전 국내외파견 또는 연구년에서 복귀한 후 일정기간 이상 계속 재직한 교수
- ② 국내외파견 교수는 6년 이상 재직한 교수, 또는 이전 국내외파견 또는 연구년에서 복귀한 후 6년 이상 재직한 교수. 단, 국내외파견은 외부기관의 재정지원을 취득한 자에 한한다.
- ③ 연구년으로 부여하는 기간은 6개월이상으로 하며 총장이 결정한다. 연구년에서 복귀 후 3년 이상 재직 한 경우 연구년을 신청할 수 있다.

제4조(재직기간 산출) 국내외파견 및 연구년 근무를 위한 재직기간은 본 대학교에 전임교수로 임명된 때부터 계산한다.

제5조(신청) 국내외파견 및 연구년을 신청하고자 하는 교수는 국내외 파견 또는 연구년 근무 실시 6개월 전까지 소속학부(과)장 및 학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에 제출한다.

1. 국내외파견 또는 연구년 허가 신청서
2. 연구계획서
3. 직무 대행표
4. 초청장, 또는 기타 관계증빙서류(필요시)
5. 보수 수령 위임장(필요시)
6. 재정지원 증빙서류(국내외파견 신청자)

제6조(심사 및 허가) ①총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외 파견 또는 연구년 허가를 신청한 교수에 대하여 교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허가한다.

② 총장은 최근 5년 동안 교내 중요 보직을 수행한 교수에게 연구년을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.

제7조(제한) ① 연구년 및 국내외 파견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. 단, 파견기관의 규정 또는 협약에 의하여 1년을 초과할 수 있다.

② 연구년을 부여하는 인원은 매학년도 소속학과 또는 전공별 전임교원의 8분의 1이내로 하되, 소수점이 하는 절상한다.

③ 매학년도 연구년 부여 교원 총수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체교원(휴직·파견 교원 포함)의 8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

④ 대학종합평가 및 소속 학과 평가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총장은 연구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.

⑤ 휴직중인 교수는 제 3조 1항 및 2항의 자격에 해당하더라도 연구년 및 국내외 파견교수가 될 수 없다.

⑥ 정관 제41 조에 의해 휴직했던 교수는 휴직기간의 2배가 지난 후에 연구년 및 국내외 파견의 자격을 부여한다.

⑦ 교무위원은 재임기간 중 연구년 및 국내외 파견 교수가 될 수 없다.

⑧ 징계처분을 받은 교수는 징계처분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연구년 및 국내외 파견 교수가 될 수 없다.

제8조(우선순위) 국내외파견 및 연구년 교수 선정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.

1. 연구년 및 국내외 파견 신청자격 취득 후 초과 년수
2. 연구년 및 국내외 파견 부여 회수 및 기간
3. 근속년수
4. 업적평가 실적 및 연구 수행능력
5. 본 대학교의 발전기여도
6. 국내외의 외부기관에서 연수비 지원 여부
7. 기타 교원인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9조(대우) ① 이 규정에 의한 국내외 파견 또는 연구년 허가를 받은 교수에게는 정규보수를 지급한다.( 정규보수라 함은 일반 교수에게 정상적으로 지급되는 봉급 및 제수당(단, 급량비, 지도수당, 직책수당 제외)을 뜻한다.)

② 이 규정에 의한 국내외 파견 및 연구년 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되나 승진소요 년수에는 포함하지 않는다.

③ 6개월 이상의 파견 및 연구년중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해당년도 업적평가는 제외되며 복귀 후 당해연도 기간부터 실시한다.

④ 승진, 승급, 재임용 등으로 평가가 불가피한 경우는 바로 전회의 평가를 당해연도 평가로 할 수 있다.

제10조(의무) 국내외 파견 및 연구년 허가를 받은 교수는 다음의 의무를 진다.

1. 연구에 충실해야 하며 연구 이외의 목적을 위한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2. 본교 강의를 담당할 수 없으나, 국내외 파견 및 연구년 개시일 현재 계속 중인 논문지도는 할 수 있다.
3. 연구년 수행시 도착보고서, 중간보고서, 연구변경신청서(필요시)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.
4. 약정된 기간 내에 복귀하여야 한다.
5. 복귀 후 국내외 파견 및 연구년 기간의 3배 이상의 기간을 본 대학교에서 근무하여야 한다.
6. 복귀 후 1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와 1년 이내에 전문저서(강의 보조용 교재는 불가) 출판, 국제수준의 학술지 또는 국내 A급 학술지에 연구논문을 게재하여야 하며(예능계 교원의 경우에는 공연, 전시 등의 발표회도 가함), 그 실적물을 소속 대학장과 교무처장을 경유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연구실적물 제출기간은 총장의 허가를 받아 연장할 수 있다.
7. 위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국내외 파견 및 연구년 기간 중 받은 보수 전액 또는 서약 불이행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.

제11조(중지조치) 국내외 파견 및 연구년의 허가를 받은 자가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지 않거나, 기타 부적합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총장은 직권으로 이를 중지시키고,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제12조(타 기관의 파견지원과의 관계) 국내외 연구기관에서 지원하는 국내외 파견 교수에 대해서는 그 기관에서 명시한 파견조건 및 지침을 우선 적용하되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준용한다.

제13조(세부사항)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제정으로 총장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

수 있다.

## 부 칙

(시행일)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0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